

의안번호	제 43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숙애 의원 등 9인
발의연월일	2020년 5월 29일

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5월 29일

발 의 자: 이숙애, 서동학, 김영주,
박성원, 임동현, 이의영,
황규철, 박문희, 윤남진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의 범위 확대 및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친화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노동인권교육 대상 학생 범위를 각급 학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하고,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(안 제9조)
-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각급 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,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9조)
- 충청북도교육청 내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기타 조례의 미미한 사항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41호

2020. 5. 21. ~ 2020. 5. 26. (5일간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”을 “학생,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,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”를 “학교”로, “학기별로 1회”를 “1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”를 “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,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위탁)”을“(전담기구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(이하 “전담기구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·교직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

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<u>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</u>”란 「<u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</u>」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5. “<u>특성화고등학교</u>”란 「<u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</u>」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6. “<u>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</u>”란 「<u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</u>」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<p>제4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<u>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교육감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 <u>학생,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) ① <u>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</u></p>	<p>제9조(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) ① <u>학교</u>-----</p>

교 및 특성화고등학교,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,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)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

----- 1회 -----

---. 다만,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-----
-----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,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---.
<단서 삭제>

제10조(전담기구 설치·운영 등)

① -----
-----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·교직원 등을 겸임

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

<신 설>

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충청북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관계 법령

□ 대한민국헌법

[시행 1988.2.25.] [헌법 제10호, 1987.10.29., 전부개정]

-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-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-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-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- ⑥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
-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근로기준법

[시행 2014.7.1.] [법률 제12325호, 2014.1.21., 일부개정]

-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 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

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(職種)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65조(사용 금지)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(이하 “임산부“라 한다)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.

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(근로시간)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
-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 설치 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노동인권교육 대상 확대에 의한 노동인권교육 지원비(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일반고 → 초·중·고등학교)
-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및 채용(노무사): 지방공무원 2명(일반 지방공무원 1명, 임기제공무원 1명) 인건비

3. 관련조문

- 「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9조, 제10조

제9조(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) ①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전담기구 설치·운영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·교직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2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및 2020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추계		연도별 추계				
산출기초	2020년 기준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1. 인건비	144,394	151,079	158,074	165,393	173,051	647,597
가. 일반지방공무원 72,197,000원×1명	72,197	75,540	79,037	82,697	86,525	323,799
나. 임기제공무원 72,197,000원×1명	72,197	75,540	79,037	82,697	86,525	323,799
2. 강사수당	22,500	22,500	22,500	22,500	22,500	90,000
가. 기본 100,000원×5명×1시간×30회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60,000
나. 초과 50,000원×5명×1시간×30회	7,500	7,500	7,500	7,500	7,500	30,000
계	166,894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

※ 2021년 이후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4.63%(2020. 보수인상률)를 적용하였음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 및 자체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교육국 미래인재과장 이남덕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계	
세 입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	
보통교부금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	
자체수입						
세 출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	
인건비	151,079	158,074	165,393	173,051	647,597	
강사수당	22,500	22,500	22,500	22,500	90,000	
재원 조달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	
의존 재원	소 계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173,579	180,574	187,893	195,551	737,597
	특별교부금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자체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기타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